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4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구자근 · 강승규 · 김선교
박형수 · 최수진 · 박준태
정점식 · 김도읍 · 강명구
이만희 · 유상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생 략)</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u><후단 신설></u></p> <p>③ ~ ⑤ (생 략)</p>	<p>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u>이 경우 국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